

| | |
|-----------------|--|
| 법인사업자 | <p>1. 법인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재무제표, 이사회 의사록, 법인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명판, 법인도장</p> <p>2. 대표자(연대보증인) 서류: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 국세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p> <p>※ 법인대표가 직접 기명날인하며,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서명은 불가</p> |
| 수입인지대 (계좌이체 예정) | <p>[대출금액 기준] 5천만원~1억원 : 7만원 / 1억원~10억원 : 15만원 (※ 50% 저축은행 부담)</p> <p>[고객님께서 준비하실 인지대] - 35,000 ~ 75,000원(대출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

※ 공동명의 계약자는 상기 구비서류 각각 구비요망.

공동명의 분양계약자는 반드시 대출지정금융기관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상기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된 대출지정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대출신청은 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불가)

나. 상기 대출지정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셔야만 무이자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제1항의 대출약정일 및 장소를 반드시 지켜 대출신청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저축은행(지정된 지점에 한함)에 직접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대출실행이 늦어져 연체가 발생할 시, 그 연체이자 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서둘러 대출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정된 기일내에 대출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 발생 등으로 대출취급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 안내문에 지정한 대출약정일에 반드시 대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 개인 신용문제 또는 소득증빙 불가 등으로 융자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출 부적격자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현재 신용관리로 규제중인 자(해지자는 제외)
2. 본인 채무가 연체중인 자
3. 중도금 대출기관의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
4. 위탁자 또는 신탁회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혹은 채무상환을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위탁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6. 위탁자의 임직원 및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
7. 매월 납입 이자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납부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1가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 서류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한 월급통장내역 또는 임대소득증빙서류 등의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소득으로 확인 가능)
8. NCB 7등급 미만인 자, 개인회생신청자, 파산신청자, 화해신청자, 기타 대출기관의 여신취급 규정상 대출실행 부적격자

4. 문의 : 한화저축은행 성남지점 김다영 대리 ☎ 031-722-0004